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羅 秉 均

(한림대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차 례〉

I. 서론	3) 향약의 성격과 전개과정
II. 본론	4) 향약의 四大綱目과 그 상호관계
1. 사회보장의 개념	3. 사회보장의 이념적 측면에서 본 향약의 특성
1)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질서 유지와 향약
2) 관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2) 경제적 연대성의 측면에서 본 향약
3)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사회질서의 유지	3) 지방자치와 향약
2. 향약의 개념	III. 결론: 환난상휼의 방법과 사회보장의 보호기술
1) 유교의 치국이념—조선의 왕도정치 이념의 허상과 실상	IV. 향약에 관련된 연구논문 및 문헌들
2) 조선의 봉건적 사회질서의 개념	

I. 서론

사회보장 제도는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 또는 국가의 구조적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식구조 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향약은 조선시대에 시행된 사회적 규약으로서 향촌단위의 자치적 노력을 성문화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필자가 생각한 것들 중의 한 가지는 향약 연구가 한국 사회보장의 연구로서 우선적으로 착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향약에 나타난 상부상조의 성격과 그 조직은 우리에게 고유한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의 사회에 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제도의 전통과 협동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식구조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한국 사회보장의 이론과 실재는 향약연구

를 통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구나 연구열을 북돋운 또 하나의 점은 한국사와 한국학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업적들 중에 향약에 관한 것이 100편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이었다.²⁾ 필자는 이들 자료들을 기초로 한 연구를 계획하고, 종료 단계까지 이 계획에 충실하게 본 연구를 추진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서의 연구경향은 한국의 유교적 전통문화의 계승에 목적을 두었든가 혹은 관료제도와 자연부락들 간의 관계정립을 시도한 것들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후자에 속하는 연구들은 주로 향약의 이념이나 실시과정 상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적 요소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의 사상적 또는 제도적 특성을 찾고자 시도하였거나 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의 맥을 사상사,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찾으려고 한 것들이다. 이러한 시도는 인접학문의 토착화에 적지않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그 시도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대다수의 향약연구들이 나타내고 있는 한계점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치 않을 수 없다. 즉 이들 연구들은 한결같이 인간과 그가 속한 사회, 이 두가지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도덕, 규범, 윤리 등의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이들 두 개체가 당연히 지녀야만 하는 속성들로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에 대한 교화노력과 사회의 化民成俗 노력이 표면상으로는 지배층의 爲民 또는 愛民思想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들의 지배의 방편으로서 동원되었음직도 한데, 대부분의 향약연구들은 이같은 이면적 동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다행히 몇몇 학자들의 연구가 앞서 지적한 획일적이고 고루한 사고의 영역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향약운동을 당시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³⁾ 여타의 분야에서 행하여진 향약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사회복지학계에 있어서의 향약연구는 몇몇 개론서의 한부분에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구자현씨의 「한국사회복지사」에는 향약이 지역사회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⁴⁾ 최일섭씨의 「지역사회복지론」의 설명에 따르면, 향약은 주민들의 자치원칙에 입각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一形態이다.⁵⁾ 이들 두 저서에 나타나 있는 향약에 대한 관점은 시간적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향약을 과거에 존재하였던 사회복지 활동의 一形態로 규정할 뿐 그것이 사상사,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려는 시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

본 연구는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를 가지고 착수되었다. 원래의 논문주제는 '조선시대 향약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이념'이었으나, 이것보다는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그것은 향약을 상부상조를 위한 자생적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인 민간조직으로 보았던 착수 당시 필자의 가설이 연구진행과 함께 옳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행정제도들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별개의 것으로 시작될 수도 운영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제도는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 전통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도입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본 연구는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 특히 향촌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경제적 연대성의 규명에 기여코자 착수된 것이다. 아울러 향약의 역사에 나타나는 官과 民의 관계를 좀더 철저히 파악하고자 시도된 것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제도는 자연발생적인 경제연대성을 심분 활성화할 때 발전이 용이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民의 생활영역에 官權이 개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歷史的 안목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되다시피한 관치주의의원인을 밝혀내는 등의 일은 제도에 대한 비판, 제도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작업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II. 본 론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개념정의는 제도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에서 가능하다.

1)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에서 생겨났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라는 사회적 변화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여러 사회적 욕구 (social needs)와 사회적 위험 (social contingencies)의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제도 중의 하나로 사회보장이 조직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내용을 한국사회의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제반의 사회변화가 파생시키는 구성원들의 경제생활 안전보장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특히 1960년대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더 이상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로 집단의 연대성이 개인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公權力의 사회분야에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

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¹⁰⁾ 이는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두 제도에 대한 公權力의 개입이, 관련되는 여러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는 사회보장의 조직을 법으로 정하거나(의료보험제도의 경우) 또는 직접 운영하거나(공적부조제도의 경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개입한다. 이같은 공권력개입규정은, 한국사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성격이 순수한 민간자치조직의 그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관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하나의 관념(Idea)으로서의 사회보장은 필자의 견해로는 일정집단에 존재하는 성원들 간의 경제적 연대성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 자신들의 최저생계 또는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관념(아이디어)으로서의 사회보장은 국가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공적부조, 특정 직종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집단의 경제적 연대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되기 이전부터 행하여져 온 인간사회의 慣行이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가 존재치 않던 전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령의 부모는 자식들의 효심으로 행하여지는 봉양 덕분에 생계걱정을 하지 않고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었으며, 한 집안의 빈곤자의 생계는 가족 내의 경제적 연대성 덕분에 보장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서 혈연 또는 가족연대성은 古來로 가족 성원들의 생계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웃사촌’이란 우리 일상 용어는 이웃이 경제생활 공동체로서 간주되어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부락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연대성은 오랜 기간동안 우리 전통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의 수단이 되어왔던 듯하다.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고유한 경제적 연대성에 대한 성격구명과 사회보장제도에 그것의 결과를 적용하는 일은 제도를 토착화하고 발전방향을 명확화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밀착되지 않는 것이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사회질서의 유지

公權力이 사회보장의 權利를 법으로 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조직화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사회질서의 유지라고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公權力의 一次的인 기능은 대상으로 하는 사회전체의 입장에 서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權力이 사회보장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는 데는 사회질서의 유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지를 위한 그것의 의도가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기 以前의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던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수단은 자본과 노동이었다. 이 두가지 수단에 대하여 가족과 혈연집단 내의 경제적 연대성은 잔여적으로 개입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본과 노동은 그 소유자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주된 수단이었지만, 모아 놓은 재산이 없거나(빈곤자의 경우) 또는 노동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노인, 쇠약자 등), 이들 빈곤자 또는 노동무능력자들의 생계는 가족, 또는 혈연집단 내에 작용하는 경제적 연대성 덕분에 그들의 생계가 보장되었다. 한국의 경우 자연부락을 단위로 한 異姓氏集團間의 상부상조, 예컨대 제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시행되어 온 民間의 自救策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의 걸품대사 때마다 행하여진 자연부락 주민들 간의 경제적 상부상조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사회의 관행인 듯하다. 以上에서 열거한 몇가지 형태의 상부상조는 집단성원들 간에 적용하는 경제적 연대성을 수단으로 했다는 것이 공통이다.

상부상조라는 人間社會의 慣行에 작용하는 힘은 당사자 個個人의 利害關係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 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가 당장은 도움을 주는 주체이지만 언젠가는 도움을 받는 객체가 된다”는 전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정 집단 내의 성원들 간에 행하여지는 상부상조는 그들 개개인 사이에 맺어지는 “주고 받는 관계”를 기초로 가능하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 의해서 주는 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부조행위, 예컨대 자선행위 또는 공적부조의 급여 등과 상부상조가 구분되는 것이다. 종교적 자선이나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의 후원금 그리고 공적부조의 급여는 주는 者-에 對한 자선인, 후원자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와 받는 자인 피조자 간의 “주고 받는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조활동들은 주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그 성격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일방적인 의사는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의 입장에서 설명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公權力이 행하는 공적급여 활동은 공권력의 자선행위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들 公權力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즉 사회질서의 유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공적부조행정이 치안 또는 경찰행정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은 국가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공행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오늘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행정, 재정에 대한 국가와 公權力의 개입은 당연시되고 있다. 국가는 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조직과 대상자들의 의무가입

을 규정한다. 한국 공적부조 제도의 경우, 국가는 그 재정까지도 책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권력이 맡는 기능은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사회질서의 유지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봉건사회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이 미처 발달하기 이전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시 公權力의 주된 기능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질서를 손상할 위험성이 있는 요소들을 미리 규제, 단속함으로써 조용하고,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을 것이다. 봉건사회는 엄격한 上下관계의 신분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조선사회의 경우 상층을 구성하는 왕과 양반 관료는 지배층으로 군림하였고, 하부층을 구성하는 民과 노비들은 피지배층을 구성하고 있었다. 상이한 각각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이 사회로부터 요구되었다. 차등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지배층의 집착은 그들이 보유하는 토지와 조세, 부역 제도 상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배층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립된 사회질서의 기본구조는 다시 피지배층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었고, 후자는 그것을 존중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배층이 취한 봉건사회 질서유지의 方法들을 우리는 대개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교화의 方法으로서, 이는 피지배층으로 하여금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웃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윤리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피지배층에게 차등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윤리관을 철저히 주입시키고 그에 따라 행동토록 함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규정지어지는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질서에 반항하는 자들을 벌하는 方法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탄압의 方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질서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피지배층으로 하여금 비판없이 질서에 따르도록 만든다. 以上에서 설명한 두가지 方法은 직접적이고 비불질적인 성격을 띠는 봉건사회 질서유지의 方法이었다. 세번째로 우리는 以上에서 열거한 두가지보다 근원적인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피지배층을 위한 경제적인 원조이다. 천재지변 또는 가뭄, 질병 등의 재난으로 인한 빈곤상태는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사회질서를 불안하게 한다. 배고픔이 극도에 달한 사람에게 도덕심, 윤리성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나친 법질서의 강조와 위법자에 대한 탄압은 자칫 수탈의 상태에 있는 피지배층으로 하여금 지배층의 특권에 적개심을 가지게 하고 조세납부를 거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봉건적 사회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할 위험성마저 있는 것이다. 이 때 피지배층을 위한 지배층의 생존보장이야말로 사회질서 유지의 가장 근원적 方法이 된다.

항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지배층의 집착은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사에서도 나타난다.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그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公權力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다.” 19세기말에 시작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가 당시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던 관료들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노선에 저소득 노동자들이 합류하도록, 회유책으로서 시작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市場기능에 입각한 자유경제체제를 전적으로 신봉하는 국가에서 조차 공적부조 급여를 중단치 못하는 근본이유는 사회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은 항상 사회질서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며 발전해 왔다.

사회질서 유지의 방법으로서 교화와 처벌 등이 직접적인 방법이라면 사회보장 또는 기타 복지제도는 회유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두가지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배를 위한 두가지 방편 즉 채찍과 빵으로 비유가 가능한 것이다. 이 두가지가 적당히 배합되어 지배수단으로 동원될 때, 지배는 용이해지고 사회적 평화(paix sociale)가 지속된다.

2. 항약의 개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볼 때, 항약은 조선의 지배층을 구성하던 양반계층에 의하여 동원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우리는 우선 항약이 봉건적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하나의 제도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선사회의 봉건질서는 그 이념상, 첫째, 왕과 民의 관계에서 王道政治로서, 그리고 둘째, 사회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三綱五倫으로서 대변된다. 우리는 조선사회를 비롯한 봉건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의 수는 소수이며 이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적인 특권이 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특권층이자 지배층의 일차적인 관심은 자신들의 특권을 여하히 보존하면서 사회적 평화(paix sociale)를 유지하느냐는 것이었다.

1) 조선의 왕도정치 이념의 허상과 실상

조선의 지배층이 내세운 치국이념은 王道政治였으며, 이 원리에 따르면 왕은 民을 위한 政治 즉 保民 또는 爲民政治를 해야 하였다. 농본 사회였던 조선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보민, 위민정치는 그 主體인 王과 국가의 生産을 도맡고 있는 民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땅히 표방해야 할 치국이념이었을 것이다. 이미 朝鮮朝에 존재한 王土思想은 명분 뿐이었고, 實際에 있어서는 民의 토지사유권이 상당수준까지 인정되었던 것 같다. 그 예로서 官房田은 무단합병이 아닌 매매의 방법으로 확보된 것을 들 수

있다.⁸⁾ 조선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은 王과 지배계층의 축적된 富에서 나오는 재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民이 생산한 농작물의 일부를 조세의 방법으로 거두어들인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운영을 책임맡은 조선의 王은 국가재정의 자원조달자인 民을 소홀히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왕도정치는 유교의 치국이념이자 지배의 철학이었지만, 이처럼 왕권존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의 지배-피지배의 관계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성왕과 현신에 의한 德治와 仁政의 實施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民生을 위한 여러가지 對策들로 具體化된다. 조선의 民生對策을 주도한 국가는 농업기술의 보급, 수리사업의 전개 등에 注力하는 한편, 국가는 貧困層의 民을 대상으로 三倉제도를 비롯한 각종 구휼 및 진대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업을 主要生産手段으로 한 조선은 재정의 안정, 국가의 번영을 지속시키기 어려웠다. 천재지변과 잦은 외환은 농작물의 감축을 가져 왔으며 그에 따른 民生畧의 문제는 사회질서의 유지에 위협적인 요소였을 것이다. 따라서 왕조 초기부터 지배층에 의하여 의욕적으로 운영되었던 각종 구휼, 진대제도는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해졌을 뿐 아니라 국가는 이 제도들을 일종의 관영 고리대화함으로써 民生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같은 구휼, 진대제도의 쇠퇴현상은 조선 중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⁹⁾ 이같은 국가중심의 養民사업의 약화는 民生問題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對策이 시급하게 되었다.

2) 조선의 봉건적 사회질서의 개념과 그 유지책

조선의 사회질서의 원칙은 三綱과 五倫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여러 사회계층 간의 차등적 인간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다. 즉 인간은 차등한 신분을 타고 나며 각자의 신분에 부합하는 思考와 行動을 명분(名分)이라 한다. 명분의 강조는 유교를 생활지침으로 신봉한 조선사회의 일반적 상황이었다. 모든 인간은 개개인의 名분에 맞는 思考와 行動을 하도록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 명분에 맞는 思考와 行動을 하는 것을 正名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회질서는 正名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의 향약은 중국 宋代의 유학자 朱子가 전해내려 오던 呂氏鄉約을 參考로하여 만든 이른바 增損呂氏鄉約의 기본구조를 당시의 사회실정에 맞게 개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朱子가 鄉約을 만든 의도는 유교의 가르침을 民에게 生活化시켜 사회기강을 바로 잡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朱子の 향약은 유교이념의 실천지침서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며, 朱子の 정신을 이어받은 朝鮮의 鄉約도 같은 性格을 띠고 있었다.

3) 향약의 성격과 전개과정

중국 宋代의 주자는 前여씨향약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손여씨향약이 수록된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책은 朱子大畧이고 이 책이 한반도에 도입되고, 유학자들에 의해 연구됨에 따라 향약이 조선사회에도 알려졌을 것이다. 유교를 국교로 내걸고 출발한 조선의 지배층에게는 그 가르침을 民에 전하고, 民의 生活에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따라서 향약은 이들의 關心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향약의 전체구성은 대충 다음과 같다.

- 德業相勸등 四約, 즉 四大綱目이 그 내용의 주류가 되고,
- 조직으로서, 우두머리인 都約正은 향촌의 연장자 중에서 한사람 뽑고 그 밑에 學行者로서 副約正을 2人 두며, 운영(입약자명부 및 善惡籍¹¹⁾ 기록 및 관리의 책임)을 맡은 直月을 두게 되어있다.

이 향약은 주자가 유학의 가르침을 民에 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제반 시행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유교적인 요소가 엿보인다. 이를테면, 會日에는 향교에서 모이는데, 집회장소에는 孔子 또는 여타의 先聖先師의 像을 모셔 놓고, 座次도 연장자 順으로 하고 學行者를 우대하는 등의 것이다. 또한 約員들은 정규적으로 집회일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집회일에는 음식을 장만하여 집회 후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다. 以上에서 설명한 향약의 개강을 살펴보면, 車勇杰氏의 주장과 같이, 年長者의 尊重이라는 傳統的 共同體生活의 규범이 反映되어있고(이것은 유교문화권의 特性中의 하나일 것이다. 필자註)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조선에 적용됨에 있어서도 여타의 전통적인 相互團結과 扶助의 樣相이던 鄉社的인 組織, 社倉的인 相助共濟, 契的인 經濟的 殖利, 鄉所의 규찰 등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¹²⁾

一般的으로 향약은 化民成俗을 위한 目的으로 鄉村에서 實施된 自治規約으로 알려져 있다. 향약의 도입은 조선중기에 조정에서 처음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향약의 실시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향약을 시행한 主體는 누구일까? 유홍열씨와 이태진씨는 향약시행의 주체를 훈구계열에 맞서는 사림계열의 양반층으로 보며, 향약을 후자들의 세력기반인 향촌에서 鮮初부터 존재해왔던 유향소제도를 뒤잇는 지방자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¹³⁾ 이러한 견해는 一人 또는 소수에 의한 지배가 시행되던 古代社會로부터 사회주도 집단 구성원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역사의 흐름으로 보는, 다시 말해서 한국사에 있어서의 發展的 史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설명이다. 그도 그럴것이 조선사회의 주도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들 사림의 규모는 이전의 고려사회에 있어서의 주도집단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증종조에 조정에서 활발히 거론된 향약의 전국적인 실시는, 그 주도세력이던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 사림파의 퇴진으로 좌절되며, 그 이후 향약은 한반도 전국적인 실시나 제도화의 길을 걷지

못했다. 신진사림파가 향약의 실시를 강력히 조정해 건의한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조정에서의 세력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까지 일부 지식층에서만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유학을 민에게까지 보급시켜 생활화하고, 민을 교화시켜서 봉건적 사회질서에 순응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향약의 실시가 향촌지배세력의 강화로 귀결되고, 따라서 중앙집권적 행정력의 약화현상을 가져온다면 조정(다시 말해서 왕과 중앙관료집단)으로서는 향약의 시행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추측컨대 사림과 유신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향약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끝내 구축하지 못한 것은 이와같은 혼구과계열 유신들의 우려가 결들여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15세기 후반부에 들면서 국가권력과 치안유지력이 쇠약화되기 시작한 역사적 현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같은 시기에 국가재정의 피폐 및 행정관료들의 부패 등을 이유로 국가가 운영하던 각종 備荒 및 救荒制度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民生苦의 문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사회질서의 혼란현상을 가중시켰다. 사림파의 숙청 이후에 거론되지 않던 향약은 명종대에 들어서서 주세붕이 다시 향약의 시행을 村耆만이라도 施行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향약의 전국적인 실시나 의무적인 실시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명종조부터 향약의 시행은 李滉, 李珣 등의 學者들이 연고지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들이 大宗을 이룬다. 중종조에서 명종, 또는 선조조 초반기까지(16세기초~16세기말)를 우리는 조선향약의 도입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조조에 들어서서는 이미 국가권력이 쇠퇴하고 국가재정이 피폐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와 함께 향약의 실시가 다시 조정에서 거론되는데, 당시의 사회상은 몹시 절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제도는 재정의 피폐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고 그 여파는 사회일반에까지 미쳐서 민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누적되어 민은 초체할대로 초체한 상태였다. 율곡은 당시와 같이 민생이 초체한 시기에 향약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향약실시 반대론을 펴다. 그의 論旨는 민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민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그의 향약에 대한 견해는 그것이 민의 교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민생문제의 해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향약실시에 대하여 시기상조론을 내세운 그가 청주목사로 재임시 임지에서 향약을 주도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임란을 전후하여 나타난 향약은 율곡의 향약에서 보듯이 환난상휼의 강조 또는 사창제와의 병행등을 통하여 民生問題의 해결에 注力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임란 전후의 향촌경제의 피폐와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備荒 및 救荒제도들이 국정의 피폐로 인하여 유명무실해지는 상황과 때를 같이 한다. 이같이 선조조에서 17세까지에 시행된 향약의 특성

은 향약 본래의 기능인 향촌자치와 향촌질서의 정립 이외에 상부상조 조직을 교화정책과 병행시킨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을곡의 사창계 약속은 향약과 사창제도를 결합한 형태이다.

18세기 이후 조선 말기까지의 향약은 향촌자치의 정신이 퇴색하고 시행에 있어서 향약 조직이 관권에 예속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말기의 향약은 향촌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왕의 명령집행조직으로 전락하고 향촌 지배층이 사리사욕의 충족에 향약을 利用함으로써 파국의 길을 걷게 되며, 결국에는 조선의 멸망과 함께 종말을 맞는다. 그 규모야 어떤 것이었든 간에, 사회주도세력에 의하여 실시된 향약은 그에 가입한 민의 생計보장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교화와 규율대책을 결비한 형태의 향약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면 민생문제는 향촌 또는 지역사회 단위로나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국의 운명을 면치 못한 향약으로 인하여, 민생문제 해결은 다시 빈곤한 민에게 맡겨져 버렸고 이들은 자치적 성격을 띤 계의 조직을 통하여 생활상의 여러가지 위협에 대처하기에 이른다.

4) 鄕約의 四大綱目과 상호관계

朝鮮의 鄕約은 朱子의 增損呂氏鄕約의 基本構造를 그대로 받아들여 朝鮮의 鄕村社會의 實情에 맞게 변용시킨 것들이 그 大宗을 이룬다. 增損呂氏鄕約의 骨字는,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와 患難相恤의 四大綱目으로 代表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朝鮮의 鄕約이 鄕村內의 秩序의 유지와 향촌민의 교화에 목적이 있는 사회제도였다면, 上記한 향약의 四大綱目은 이 두가지 目的과 관련하여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것일까? 患難相恤이라 함은 향촌에 患難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부락민이 相扶相助해야 한다는 規約인데 그렇다면 여타의 三綱目과 患難相恤의 條는 어떤 有機的 關係를 지니는 것이며, 후자는 향약실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어떤 役割을 담당하는 것일까?

以下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四大綱目的 개념을 鄭享嚴氏의 解說을 통하여 이해해보자.¹⁴⁾

德業相勸 : 德業은 三綱五倫에 합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修身濟家, 孝道, 벗들과의 화목, 법령의 준수, 조세를 정성껏 납부하는 것 등의 것이다. 향약은 德行을 스스로 잘 닦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同約人 스스로가 권장하되 집회일에는 德業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約員이 천거하여 善籍에 기록케 함으로써 그의 德을 권장하였다.

過失相規 : 過失은 범죄와 不修(수양이 덜 된 행위)로 예를 들면 나쁜 사람과의 사귄, 집회에 늦음, 낭비, 허풍 등)를 의미하며, 향약은 同約人 스스로가 과실을 살피고 경계토록

하고 있으며, 그 과실은 향약의 우두머리인 約正에게 보고하여 시정토록 하고 끝내 불복하면 出約(향약 명부에서 삭제: 필자註)시키도록 하였다. 대개 향약은 일개의 자연부락 또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향약의 명부에서 삭제된다는 것은 마을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거운 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禮俗相交: 禮俗은 日常生活과 人倫大事(예를 들면 冠婚상제: 필자註)등에서 禮를 갖추어 임하는 것을 뜻한다. 禮俗相交의 條項은 연령에 따라 취해야 할 禮節을 等給을 매겨 規定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才 以上 연령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윗사람을 부모처럼, 10才 이상인 경우에는 형처럼, 10才 미만인 경우에는 동년배로 각각 대접하는 따위로서 이는 社會生活에 있어 수평적, 수직적 인간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患難相恤: 患難에는 水火, 도적, 死喪, 질병, 孤弱, 誣枉, 빈핍의 7가지가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同約人들이 도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水火의 경우, 사람을 보내어 돕게하고 그 정도가 큰 것이면 직접 구출, 조문한다. ② 도적의 경우, 피해자와 합심해서 도적을 잡고, 경우에 따라 官에 보고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한다. 피해자가 가난할 경우에는 현상금을 同約人들이 부담하여 도둑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질병이 났을 경우, 가벼우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심하면 의원과 약을 구해준다. 병난 자가 가난하면 요양하는 비용을 돕고, 은 집안식구가 병들어 누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약원들이 협력하여 경작해준다. ④ 死喪의 경우에는 勞動力을 提供한다. 그리고 貧者가 喪을 당했을 경우 物質扶助를 實施한다. ⑤ 孤弱의 경우, 예를 들어서 同約人이 죽고 그의 자녀가 남아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는 그를 맡아 敎育시키거나 喪의 貳錢을 마련해준다. ⑥ 誣枉의 경우, 합심하여 그의 누명을 벗겨주며 得罪로 인하여 喪의 貳錢을 잃은 경우에는 재물로 구제하여 준다. ⑦ 빈핍의 경우에는, 재물을 주거나 대여하여 주어서 家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되 대여받은 것은 오랜 세월이 걸쳐 점차 상환토록 한다.

以上에서 설명한 네가지 綱目들을 우리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의 세가지로서, 이것들은 民의 教化에 목적이 있는 것들이며, 사회질서 유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직접적, 비물질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환난상휼인데 이것은 上述한 三大綱目에 대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난상휼은 教化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회질서 유지의 입장에서 보면 회유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이념적 측면에서 본 향약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1) 사회질서의 유지와 향약

향약은 봉건사회였던 조선의 질서유지 수단으로, 지배층에 의하여 동원된 제도이다. 봉건질서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이겠으나 그 중 두드러진 것들로는 첫째, 신분제 입각한 차등적 질서가 원칙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 둘째,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엄격한 분리와 지배층의 소유 및 조세, 부역과 관련된 특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째, 구성원들이 윤리, 규범, 사회질서 등을 존중하는 것이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의 지배구조는 중앙집권 관료제도로 일관되었다. 중앙에는 왕과 관료가 있고 이들의 명령집행기구이자 중앙집권제도의 축수인 수령이 군, 현에 제도화되어 있었다. 수령은 위로부터의 명령과 지시사항을 아래와 민에게 전달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관료로서 향촌 지배층과는 類를 달리하였다. 달리 말해서 수령이란 관직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중앙의 입장에서 民間을 대상으로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집행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군현제라고 부른다. 군현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郡과 縣으로 이 군현의 以下에 있던 향촌의 지배는 鮮初부터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세종조에 와서 향촌부락을 五家단위로 조직화하였고 이 조직을 수령 밑에 둬으로써 향촌을 중앙의 통제 안에 묶어 놓았다. 이 제도를 五家作統制라 부르는 데, 이는 향촌의 무질서한 인구이동(지역간, 계층간)과 민심의 교란을 막아 향촌의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같이 관에 의하여 조직된 五家作統制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권력과 치안유지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16세기 후반부 초가에는 그 근본이 흔들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승계氏의 說에 의하면, 이같은 국가권력과 치안유지력의 쇠약화로 빚어지는 향촌의 무질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조정에서 거론된 것이 향약도입이라는 것이다.⁸⁾ 그의 說에 따르면 향약은 本質的으로는 五家作統制의 뒤를 잇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향약은 민의 교화와 구휼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은 前述한 향약의 四大綱目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네개의 조항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구휼의 내용이 교화의 내용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네 개 중 세 조항이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또한 구휼의 내용을 담은 환난상휼 條가 고작 맨 마지막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사회질서 유지의 방법으로서 두가지가 있음을 지적했으며,⁹⁾ 향약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휼이라는 간접적이고 회유적인 방법보다는 교화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치

국의 이념으로서의 유교가 인간생활의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관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보다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전국에 즈음하여 집권자들이 강조하던, 民生과 保民을 앞세운 왕도정치 이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율곡이 내세운 “先養民后教民” 또는 “先富后教”의 주장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질서 유지책의 하나로써 동원되는 사회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이다. 그의 주장은 식량이 부족하면 禮가 행하여 지지 못하므로 향약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먼저 양식이 충족된 후에 교육을 시켜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理想과 現實에 관한 그의 思想과 연결시켜 볼 때, 특히 사회복지학은 사회현실의 비판과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율곡의 학설이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봉건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의 변화를 하나의 발전으로 본다면, 이것은 종전에 교화와 무분별한 억압의 대상이던 빈곤계층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물질적 기본욕구 충족의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관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생존권의 보호는 우리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공적부조의 내용은 유명무실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실현, 복지국가 건설은 선거구 호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절도 등의 범죄는 절도자의 부도덕성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할 뿐 빈곤, 소득의 심한 불평등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하려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도 지배층과 가진 자들이 봉건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2) 경제적 연대성의 측면에서 본 향약

사회보장은 대상으로 하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연대성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력하고 보다 실질적인 것일수록 사회보장의 재정은 견실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조직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들의 여러 경제적 연대성, —예컨대 혈연, 지연, 직업연대성 등—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견실하고 실질적인 것이냐를 우선 고려함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혈연은 여러 연대성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내에서 살아있는 가족연대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향약과 가족연대성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지연과 향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한국의 전통사회(또는 농촌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공동체 개념의 가족은 堂內間(8寸之間)에 한정된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농촌사회에서의 경제적 협동에 관한 최재석氏의 연구결과와도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의 동족집단에 있어서 “생활 협동면에서 어느 정도 강한 결합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형제집단과 堂內집단이고 그 이상의 범위의 동족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연대성 다음으로 중요한 전통사회 속의 연대성은 지연이었다. 향약의 실시단위인 자연부락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지금까지의 연구업적들 中에서, 한국 고대시대 자연부락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논문은 찾기 힘들다. 관계된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족부락의 형성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승제씨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족부락의 형성시기를 임란이후로 보고 있다.” 그는 동족부락의 형성동기에 대하여 임진왜란 이후의 폐허화된 촌락사회를 철연적 연대성을 핵으로 재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그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약 66%의 현존 동족부락들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내지 350년 前의 기간동안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 최재석씨가 추정한 연대(17세기 혹은 그 후대 : 필자 註)와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동족부락의 형성과 그들 내부의 자치적인 부락 운영은 근대 촌락사회의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첫째, 시기적으로 보아 향약의 시작은 위에서 추정된 동족부락 형성 以前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향약의 번성기로 추정되는 16세기 또한 한반도에 동족부락이 확대되기 이전의 시기라는 것이다. 셋째로 설명 17세기 이후 동족부락 형성이 일반화되었다손 치더라도 과연 동족부락의 구성원 모두가 同一姓氏였다는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點이다. 넷째로는 門中稟業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는 특성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여러 문중에서 종가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전개해 온 소위 문중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家門內의 빈곤자 및 빈곤가정을 위한 구휼, 또는 구제사업, 대책 등이 거의 전무하다. 최재석氏에 의하면,

동족이 宗中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상의 제사와 관련된 일 혹은 그들 동족의 위세를 밖으로 과시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뿐 빈곤한 동족의 원조에는 거의 사용치 않고 있다. (……)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동족집단이 생산집단이 아닌 것은 물론이지만 일상생활의 협동이나 상부상조의 기능의 면도 뚜렷하지는 못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以上の 논거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향약이 규정하는 환난상휼과, 향약이 시행된 자연부락내의 경제적 연대성은 혈연 이외의 요인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관용구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사촌 間은 경제적인 연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관계이다. 한국의 契의 형성시기는 동족부락 형성기인 17세기 이전부터이다. 계는 혈연보다는 지연과 관계가 있으며 지연을 중심으로한 상부상조의 연륜은 매우 깊다. 송시열의 회덕향안 序²⁰에 나타난 그의 주장 또한 지연과 연관되어 있다.

즉 “호서지방에는 三大族姓이 있으니 연산김씨, 이산윤씨, 회덕송씨가 그것인데 이 三大씨족은 비록 姓은 다르다고 하여도 서로 혼인하게 됨으로써 舅甥 間의 척분이되는 고로 사실은 一統과 같다”고 강조하고 “경주김씨, 연산이씨, 동래정씨, 순천박씨 그리고 황씨, 한씨, 연씨, 변씨, 노씨, 양씨 등이 하늘의 별들처럼 자리잡고 있으니 相扶相助 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²¹

송시열은 여러 성씨들 간의 상부상조의 중요성을 피력한 다음 이들은 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가 인척관계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강조하고 있는 상부상조는 여러 성씨들 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연적 연대성에 기초한 것이다. 추측컨대 우리사회에 있어서 지연에 기초한 주민들 간의 상부상조는 오랜 전통이며, 지연에 기초한 주민들의 연대성은 인간의 속성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향약에 있어서의 상부상조도 혈연보다는 지연에 기초하였던 듯하다. 그렇다면 향약이 규정한 상부상조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대부분의 향약은 入約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입약자는 가입과 동시에 일정량의 곡식을 납부하고 이처럼 납부된 곡식이 모여서 환난상휼을 하기 위한 기금이 된다. 또한 가입원이 관혼상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지출이 요구되든지, 또는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 가입자들이 자금을 추가로 염출하거나 일손을 내는 방법들을 통하여 상부상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덕씨는 가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향규(鄉規)와 향약(鄉約)을 구분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향약은 그것이 시행되는 지역의 上下人(班·常·奴)을 포함한 전원이 대상이지만 향규는 향원(鄉員)만을 대상으로 한다.”²²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향약은 일정지역의 연대성을 조직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싶다. 가입자격이 일정지역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느냐 또는 그 지역의 엘리트계층인 鄉員에만 국한되었느냐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중요한 점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 엘리트들은 향촌세력을 대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란후로 오면서 일정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향약 또는 향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의 사회적 실정은, 유민, 도망 등으로 부역,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민이 많아져 결과적으로는 향촌민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따라서 쏠住民의 가입을 향약이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향촌민 개개인의 조세, 부역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지방자치와 향약

향약은 한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적 요소들을 찾고자 하는 一群의 학자들에게 중요한 主題들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것이 향약은 향촌자치를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 내재하는 지방자치적 요소를 연구하는 작업은 우리의 일반행정제도가 미래에 구축할 지방자치제도의 토착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 행정도 일반 행정의 원칙에 기초해야 함을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행정과 지방분권적 행정의 요소를 조화시키는 근거는 일반 행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향약에 나타난 지방자치적 요소는 사회보장제도의 토착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개념은 서구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서구의 지방자치 개념을 우리 역사 속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서구의 지방자치는 상공업에 종사하던 계층이 봉건영주 또는 절대왕정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서구의 초기지방자치 노력의 主導세력은 상공업에 종사하던 자유민 집단이었다. 이들은 영주권이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모여 살면서 자체의 힘으로 외침의 위협을 물리치면서 자치권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였다. 이들의 자치는 이윤의 추적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자립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구역(예컨대, 중세의 상공업도시)은 봉건 영주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역이었다.

만약 향약을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적 노력으로 본다면, 필자의 생각으로, 이때의 지방자치는 한국적 상황에 기초한 명확한 개념규정 작업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조선 향약의 지방자치적 성격은 서구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다음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닌다. 첫째, 그것은 양반儒生들에 의하여 주도된 知的 엘리티즘의 성격을 띤다.²⁰⁾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의 경우는 그 주체가 상공인 계층이었고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多元的인 것이었다. 둘째,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향약운동이 전개되었다. 더우기 조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향약은 중앙관료체제의 하부기관

의 기능을 띠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봉건질서의 유지에 기여하였다. 이와는 달리 서구의 경우, 지방자치는 봉건적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집단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다. 셋째로 향약을 주도한 양반계층은 일반적으로 체제순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의 체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로 일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약이 지방 또는 향촌자치적 성격을 띤다고는 하나, 그 주도세력이었던 양반사대부의 사고방식이 서구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조선 통치체제와 지배층의 사고방식은 오늘날의 지방행정 상황에서도 계속 작용하는 듯하다. 그 첫째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엘리트층에 입각한 결정방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예로서 도시 또는 부락의 의사결정은 왕왕 그 지역의 몇몇 유지들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를 목격한다. 그 둘째는, 관치주의가 민에 의해 감정적으로는 배척되면서도, 강력한 관주도적 정책은 지방에서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서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관주도적으로 시행된 새마을운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지방, 특히 농촌에 있어서 官의 존재는 民間活動에 비해 우위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상공업종사 피고용자 계층의 증대와 중산층 인구의 증가는 民本사상에 입각한 서구의 지방자치제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인구의 과반수 가량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한다면, 지방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측면은 여전히 중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회보장은 그 운영방식으로서 중앙집권적인 방법과 지방자치의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만약 사회보장이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분명 운영의 효율성, 신속성에 보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은 일사불란한 명령하달 및 집행체계를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 예산의 부담, 수혜 상의 지역간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사회보장이 지방자치의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재정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연대성이 보다 실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재정의 현실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 연대성이란, 경제적 공동 운명체 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우선 사회보험금고의 수입면을 보면 모르는 누구를 위해서 세금 또는 보험금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낸다는 생각이 들 때, 납부대상자들이 사회보험수입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금고의 지출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가입자의 소비의 억제노력이 그의 보험료율의 저하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절약을 위한 노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력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서어비스 제공의 획일화를 막고,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어비스의 개별화는 수혜대상자가 느끼는 욕구에 밀착된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 된다. 셋째의 장점은 허위신청, 과다신청에 의한 사회보장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의 생활정도는 이웃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규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자격판정이나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이웃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는 운영방식이 지방자치 제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필자의 소견으로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하나는 중앙집권적 운영방식과 지방자치방식을 각각의 장점을 여하히 절충하느냐에 있다.

향약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와 밀착되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조선왕조 전 기간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民間活動에 끊임없이 관계해 온 관료제도는 民生問題의 해결에 있어서도 물론 주체는 민이었으나 官의 끊임없는 통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다. 향약을 조선의 지방자치적 노력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와 다소간 의존적인 관계에서 탈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향약이 표방하는 향촌자치는 다원론적 의사결정방법이 아닌 소수의 知的 엘리트, 다시 말해서 유학을 연구하던 양반사대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기본구조에 있어서 서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는 도시지역 상공인 계층 및 임금노동자 계층에 별다른 무리없이 적용, 운영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 계층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므로 이미 구축된 제도의 기본골격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고 다듬는다면 도시형 사회보장제도는 별 무리없이 발전되어 나아갈 것이다. 반면에 농촌의 사회구조 및 주민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전통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형 사회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과 농촌주민의 의식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전통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의식구조라는 두가지 요소들이 제도수립에 결정적인 변수들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촌형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집행진과 이사진 간의 권력안배가 중요시되며, 둘째, 사회보장제도 내의 의사결정자들의 자질향상과 진취적 사고의 고취가 뜻을 대상으로 한 권력의식 함양보다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으며 셋째는, 소수에 의한 지배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력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結論 : 患難相恤의 方法과 社會보장의 보호기술

향약의 4대강목중 患難相恤 條는 社會보장 연구에 있어서 보호기술上에 시사하는 점이 몇가지 있다. 필자는 향약의 患難相恤 條에 나타난 보호기술 上의 특성에 대해 논술하는 것으로 結論을 대신하고자 한다. 社會보장의 보호기술과 관련시켜 볼 때, 물질적 상부상조의 규약이랄 수 있는 향약의 환난상휼 條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대상자는 가입과 동시에 일정량을 기여하고 매년 정규적으로 일정량을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율곡의 해주향약 입약법례²⁾에 따르면, “처음 향약을 정할 때에 규약에 참여한 사람도 각각 무명 한 ���, 삼배 한 ���, 쌀 한 말 썩을 내어…… 뒷날 질사나 흉사 때에 救恤하는 자금으로 쓴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규적인 기여에 관하여서는 “매년 11월의 모임 때에는 같은 약원들이 각각 쌀 한 말 썩을 내어서 사화(司貨)³⁾에게 맡기며……, 만약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백성에게 놓아서 10분지 2의 이식을 받아 사창법과 같이 하고, 부족하면 같은 약원이 적당히 헤아려 더 내어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양반과 상민이 부담하는 기여량과 환란을 입었을 경우에 받는 혜택의 양에 있어 차등적 분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반은 상민의 두배를 기여하고, 받을 때도 두배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⁴⁾ 셋째, 거출된 곡식 및 옷감등은 바로 분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마련하여 지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을 수단으로 한 식리사업도 허용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넷째, 관혼상제 등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액을 추가 거출토록 되어 있으며 거출과 급여를 통한 同約人 간의 경제적 연대성에 의해서 뿐 아니라 노동 협동의 형태로도 상부상조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해주향약의 경우 患難相恤의 7가지⁵⁾ 중, 死喪의 경우, 現物扶助 以外에 喪家에 힘센 종(壯奴) 한 명씩을 보내게 되어 있으며, 火災가 난 경우에도 지붕을 덮을 것과 재목 등 現物을 보내는 이외에도 종 한 사람씩을 보내되 사흘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 짓는 일을 돕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조의 방법으로서는 무조건의 급여(다시 말해서 일단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부조) 뿐 만 아니라 조건이 붙는 급여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서 환난상휼의 일곱번째 대상인 貧乞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서는 재물을 주거나 대여하여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되 대여받은 것은 오랜 세월이 걸쳐 점차 상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창과 향약이 병행 실시되는 경우 사창의 운영방법으로서 春散秋收의 方法이 크게 일반화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섯째로, 빌려간 곡식, 상환해야 할 부조금 등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응하는 벌과조항이 향약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대의 社會보장법과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형법의 관계에 비견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벌과조항이 규정대로 잘 지켜졌는 지는 의문이며 이는 하나의 제도로서 향약이 가지는 공신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조선 전기에 정부가 시행하던 환곡제도가 실패한 주요 원인은 제도가 지녀야 했던 공신력의 결여였다. 조선의 멸망과 운명을 같이 한 향약의 경우, 환난상환 조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신력이 엄격히 유지되었느냐는 점은 연구조사로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본다.

IV. 향약에 관련된 연구 논문 및 문헌

(1) 연구논문

高稿亭, 栗谷先生と 郷約(社會敎化資料 제 1집)

高承濟, 郷約導入의 歴史的 背景, (한국사론 8 “조선 전기 서원과 향약” pp. 175-196, 1980.

12. 국사편찬위원회)

高承濟, 근세 향촌제도의 붕괴와 촌락사회의 구조적 변화, (학술원 논문집 제 14집 - 인문. 사회과학편 - 1975. 10. 대한민국 학술원, 서울)

今村 綱, 朝鮮の地方自治制度に就いて, (조선 총독부, 조선총람, 1933.)

김경식, 을곡의 향약과 사회교육사상, (한국교육사학 제 4집 pp. 125-152 1982. 7. 한국 교육학회 · 교육사연구회, 서울)

김대연, 한국노인복지제도와 교육에 관한 연구(홍대논총 XV -인문사회과학편, 서울, 홍익대, 1984)

김무진, 을곡향약의 사회적 성격, (學林 제 5집, 서울, 연세대사학연구회, 1983)

김병찬, 이조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일 연구 -유향소를 중심으로- (경북대 논문집, 7집, 대구, 1963)

김병하, 계의 사적 고찰, (경상학보, 7집, 중대경상학생회)

김복호, 을곡의 정치사상, (연대 교육대학원논문, 1970)

김삼수, 계의 제 학설의 음미와 그 단체 개념에 관한 사적연구,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아세아 여성 연구, 1권, 서울, 1962)

김영돈, 을곡향약의 정신과 그 영향에 대한 고찰(명지대 논문집 제 7집, 서울, 명지대, 1974)

김용덕, 향약과 향규(한국사론 8, 조선 전기 서원과 향약, 국사편찬 위원회, 1982)

김용덕, 향청연혁고(한국사 연구 제 21, 22집 -창간 10주년 기념호, 서울, 한국사 연구회, 1978)

- 김용덕, 고려조 사회와 조선조 사회는 질적으로 다른가, (동아일보사, 신동아, 통권 24 호, 서울, 1966. 8)
- 김용덕, 고려. 조선사회의 비교-한국 근대화 과정서설-(사상계사, 사상계, 통권 134 호, 서울, 1964. 5)
- 김용덕, 한국 농촌에 있어서의 동족부락, (중대 학생회 文耕, 1962)
- 김용섭, 환곡제의 釐正과 社倉法(東方學志 제 34 집, 1982. 12. 연대국학 연구소, 서울)
- 김용섭, 조선시대 농민의 존재형태, (고대 사학회 史叢 1 집, 서울, 1955)
- 김용섭,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동-농촌경제-(한국 사학회, 사학연구, 16호, 1963)
- 김용차, 한국전통사회의 정제 요인에 관한 연구-통치 이념형과 하위사회조직 기능을 중심으로-(중대 정경대 학생회, 정경논집 창간호, 서울, 1969)
- 김유혁, 향약의 유형적 고찰(법사학 연구 제 3 호, 1976)
- 김유혁, 우리나라 지역사회 운동에 관한 時系的 고찰, 특히 향약을 중심으로(詩文集 사회과학편 9 집, 서울, 건국대, 1975)
- 김인걸, 18, 9세기 신분제 동요와 향촌 사회 지배층 동향, (서울대 석사논문, 1978)
-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통제책의 위기(진단학보 제 58 호, 진단학회, 1984)
- 김준형, 18세기 里定法의 전개-촌락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진단학보 제 58 호, 진단학회 1984)
- 김진봉, 조선 세종조의 진휼정책에 관한 연구.I-특별정책을 중심으로(충북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 17 집, 1979. 4, 충북대학교, 청주)
- 김진봉, 조선 세종조의 진휼정책에 관한 연구.II-일반대책을 중심으로(충북대 논문집 제 19 집, 1980. 5. 충북대학교, 청주)
- 김차룡, 사회구제의 역사와 사회보장, (동아대 학예부, 東亞, 부산, 1963)
- 김채운, 礪溪 柳鑿遠의 福祉觀(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3 권 1 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1)
- 김홍식, 이조에 있어서 동족 공동체의 성립과 군현제, (史林, 58 권 5 호, 1957)
- 남상만, 조선시대의 가족복지 발달사에 관한 연구(韓社 실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6 집, 한사 실업전문대학, 대구)
- 渡邊彰, 賑恤救濟に關する朝鮮の舊制度の概觀(진휼구제에 관한 조선구제도의 개관, 조선연구회, 조선연구자료 70 호, 1934)
- 東岩生, 조선 계의 사회사적 고찰(동방평론, 동방평론사, 서울, 1932)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 麻生武龍, 조선 시대의 倉庫와 사회정책(조선학보 1권 1호, 조선학회, 1930)
- 文守弘, 조선후기 신분제 동요의 일 고찰(미상)
- 민동근, 한국의 전통적 윤리사상의 발전(한국인의 윤리관Ⅱ, 성남,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4)
- 민병하, 조선서원의 경제구조(대동문화 연구, 1968)
- 박덕배, 향약의 법적 연구(법사학 연구 제 3호, 서울, 한국법사학회, 1976)
- 박덕배, 사창법에 대한 사회법적 연구, (문교부 연구 보고서, 사회과학계, 통권 22호, 서울, 1970)
- 박덕배, 향약의 노동법적 연구,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사회과학계, 1968)
- 박영규, 조선조 정신연간의 기근에 대하여—특히 서울을 중심으로(서울市史委, 향토서울, 통권 19호, 1963)
- 박영신,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연세논총—인문사회과학편, 제 14집, 서울, 연대 대학원, 1977)
- 박종홍, 퇴계의 인간과 사상(서울, 국제문화연구소, 世界 2권 4호, 1960)
- 백남운, 조선 제의 사회사적 고찰(현대평론, 서울, 현대평론사, 1927)
- 백종기, 이조 후기에 있어서의 濼政(黷)의 악폐에 관한 소고(인문과학 제 8집, 서울, 성균관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睿 山, 조선의 의창제도(신동아, 서울, 신동아사, 1934)
- 本間力介, 朝鮮の財政は 何在以乙廢弛せらせ, (조선강연 1집, 서울, 조선 강연회, 1910)
- 富文永一, 往時の朝鮮に於ける自活萌芽 郷約一斑, (조선총독부)
- 山島藤世, 이조 중기에 있어서의 향약의 구조와 역할(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정문연, 1980)
- 四方博, 李朝時代 郷約談義(四海公論, 서울, 四海公論社, 1943)
- 四方博, 李朝時代郷約の歴史と性格, 경성제대 법학회 논집 14책 5호, 경성제대, 1943)
- 善生永助, 朝鮮의 契(조사자료 제 17집, 서울, 조선총독부, 1926)
- 성주탁, 우암 송시열과 회덕향안—회덕향안에 나타난 그의 사상과 계보를 중심으로—(한국사론 8, 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서울, 국사편찬 위원회, 1980)
- 성주탁, 회덕향약고(백제연구 제 9집, 대전, 충남대 백제문화 연구소, 1978)
- 孫仁鐵, 한국인의 화합과 상부상조의 관행연구(국민윤리연구 제 20호, 서울, 국민윤리학회, 1984)

- 손홍열, 이조시대 의료제도 (1) 선초 의료기구의 설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 30, 31 합집, 서울, 역사교육연구회, 1982)
- 松田甲, 李朝時代の郷約(조선, 159호, 조선총독부, 1931)
- 松田甲, 李朝時代の郷約(續日鮮史話, 1931)
- 松田甲, 李朝時代の郷約(조선총략 370호, 조선총독부, 1933)
- 송찬식, 이조시대 選上取 耗複用考(서울대학원 논문, 1965)
- 신용하, 정약용의 選上制度 改革思想—茶山の 福祉觀의 斷面—(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3권 2호, 1981)
- 신정희, 이조전기의 流民問題(역사 교육론집 제 2집, 대구 경북대 사대 역사과, 1981)
- 신정희, 조선 향약 시행에 대한 일고찰(대구사학 제 5집, 대구, 대구사학회, 1972)
- 신정희, 향안연구(대구사학 제 26집, 대구, 대구사학회, 1984)
- 심재빈, 이조 관료제가 한국사회 후진성에 미친 영향, (지방행정 88호, 대한지방행정협회, 서울, 1961)
- 유교성, 이조시대 契의 연구, (동화문화연구위, 업적보고서, 1965)
- 유명종, 퇴계 사상의 현대적 해석(세대 92호, 世代社, 1971)
- 유흥열, 조선 향약의 성립(진단학보 9호, 서울, 진단학회, 1930)
- 윤사순, 한국 성리학에 나타난 인본사상(퇴계학보 제 17집, 서울, 퇴계연구원, 1978)
- 윤사순, 조선전기 성리학의 사상적기능(민족문화연구 9호, 서울,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1975)
- 윤사순, 퇴계 심성에 관한 연구—四端七情論을 중심으로—(아세아연구 41호, 고대 아세아 문화 연구소)
- 윤사순, 동양사상과 한국사상(을유신서, 서울, 을유문화사, 1984)
- 윤성범, 퇴계와 율곡의 天思想(제 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이각중, 朝鮮に於ける救濟制度の沿革(조선연구자료 제 71호 조선연구회, 서울, 1934)
- 이각중, 朝鮮に於ける救濟制度の沿革(조선, 제 81호, 82호, 조선총독부, 1921)
- 이건형, 조선왕조의 의료구조와 그 정책(대구교대논문집 제 10집, 대구교대, 1975)
- 이결우, 계의 사적 고찰(制海 통권 11호, 진해해사, 1957)
- 이광린, 향리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1954)
- 이동준, 화담과 율곡철학의 이동에 관한 고찰, 一氣論을 중심으로(哲學 5집, 한국 철학회,

서울, 1971)

- 이병도, 조선의 구황정책(고시제 2권 5호, 국가고시학회, 1957)
- 이병도, 울복과 경세사상(행정논총 7권 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9)
- 이병도, 근대조선의 삼정의 문란과 그 영향(고시제 3권 3호, 국가 고시학회, 서울, 1958)
-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한국사연구, 1970)
- 이수건, 조선조 향리의 일연구(영남대 논문집, 1974)
- 이우성, 조선前期 성리학과 사대부(이우성 한국학논집 제2집, 대구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이원주, 향약에 대한 고찰(논문집 10집, 상주 농잠고등전문, 1974)
- 이장우, 향약(퇴계학보3집, 서울, 퇴계학 연구원, 1974)
- 이정희, 조선전기의 시민생활—주택—(서울 육백년사 1권, 서울 시사편찬위, 1977)
- 이태영, 李朝時代の救荒(“朝”, 1977)
- 이태진, 15, 16세기 신유학 정착의 사회경제적 배경(서울대 도서관, 1981)
- 이태진, 조선전기의 향촌질서, 성리학질서확립을 중심으로(동아문화 제13집, 서울대 동아 문화연구소, 1976)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독립운동(진단학회 34, 35호)
- 이태진, 향정과 향약(한국사연구입문, 한국사연구학회편, 서울, 지식산업사, 1982)
- 이태진, 조선전기 성리학과 향촌사회, 한국학 논집 2집, 대구,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 이태진, 울복 이이의 사회개혁사상(문화비평 1권 2호, 서울, 문화비평사, 1969)
-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한국문화 4, 서울대 한국 문화연구소, 1983)
- 이택휘, 전통적 국가관의 변천에 관한 연구(현대사회와 윤리,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82)
- 인정식, 의창 사창고(朝光 9권 7호, 서울, 朝光社, 1943)
- 임기형, 조선전기 구휼제도 연구(역사학 연구 3집, 광주, 전남대 문리대 사학회, 1967)
- 임영철,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의 현대적의미(교육 논총, 왕간호,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84)
- 장동섭,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서민 협동체제로서의 계에 관한 연구, 특히 이조시대를 중심으로, (광주, 전남대 논문집 15집, 1969)
- 田川孝三, 朝鮮の郷規について(朝鮮學報 76, 78, 81집, 1975)
- 정진영, 조선후기 향약의 일고찰, 부인동 동약을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 제2, 3집,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1982)

- 정형우, 조선향약의 실시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한 고찰(인문과학 23집, 서울, 연세대 인문과학 연구소, 1970)
- 정형우, 조선향약의 구성과 그 조직, 주자향약과 퇴계, 을곡향약을 대비하여(이흥직 박사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서울, 1969)
- 미 상, 조선의 특이한 처지와 이에 대한 특이한 구제책(개벽 통권 31호, 서울, 개벽사, 1923)
- 조성교, 임실지방에 성행한 향약과 동약(전라문화연구 창간호, 전주, 전북향토문화 연구회, 1979)
- 지교현, 조선조 향약의 사회적 기능(논문집 제 13집, 청주교대, 1976)
- 차용걸, 향약의 성립과 시행과정(한국사론 8, 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국사편찬위원회, 1980)
- 최경락, 이조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일연구, 유향소를 중심으로(경북대 논문집 7집, 대구, 1963)
- 최영희,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동(史學研究 16호, 1963)
- 최익한, 조선의 후생정책 고찰(춘추 2권 9호, 조선춘추사, 서울, 1941)
- 최재석, 동족부락(한국사 13, 조선 양반사회의 변화, 국사편찬위원회)
- 최재울, 한국농촌의 향약제 연구, 鳩林大同契의 사례를 중심으로(전남대 논문집 제 19집, 광주, 전남대, 1973)
- 최재현, 한국 전자분주의 생산양식의 개념규정문제(서울대 사회과학 연구회편, 이만갑교수 화갑기념 논총,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1983)
- 최종고, 정도전의 법사상, 한국 법사상에 대한 시고(문학과 지성 제 6권, 서울, 일조각, 1975)
- 최창호, 우리역사에 비친 지방자치제적 요소(法政, 서울법정저, 1967)
- 최해갑, 을곡과 현대사상(頭流 2호, 진주교대 학생회 학예부, 1967)
- 최흥기,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엘리트 조직과 활동(靑樵 裴龍光教授 華甲記念論叢)
- 최흥기, 조선시대의 지역사회 엘리트 집단(서울대 사회과학 연구회편, 이만갑 교수 화갑기념논총,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1983)
- 卓用國, 略述 韓國還穀制度 及其影響(中國文化院 출판부, 사학회간, 대북, 1971)
- Paolo, Santangelo, 柳壽垣(1694-1755)의 국가근본론(제 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성남, 정신문화 연구원, 1980)
- 하상락, 우리나라 구빈사업의 변천과 그 사회적 배경, 이조시대를 중심으로(문교부연구 보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고서 제 20 호, 서울, 1970)

한상권, 16,17 세기 향약의 구성과 성격(진단학보 제 58 호, 서울대 출판부, 1984)

한우근, 성호 이익의 복지관(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3 권 1 호,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 1981)

황상고, 을곡의 윤리사상연구, (고려교육대학원논문?)

황선희, 유학사상이 조선후기에 미친 영향(사학지 제 16 집, 서울, 단국대 사학회, 1982)

황준연, 을곡의 사회사상에 대한연구(同大논총 제 10 집, 학장 조용욱박사 교육봉직 50 주년 기념, 서울, 동덕여대, 1980)

허종욱, 조선초기의 집권적 봉건국가 권력의 물질적 기초에 관한고찰(사회과학 논총 제 2 권 제 1 호,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1983)

Fujiya, Kawashima, The role and the structure of the local gentry association in mi-Yi Dynasty Korea, a preliminary study of cha'ngnyōng Hyangan 1600-1838 ?

(2) 단행본

고승제, 한국촌락사회사연구, 일지사, 1983

구자현, 한국사회복지사, 홍익제, 1984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론 8, 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1983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 12, 조선 양반사회의 모순과 대외항쟁, 서울, 탐구당, 1981

김경탁, 을곡의 연구, 서울, 한국연구도서관, 1960

김두헌, 한국 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2

김용덕, 향청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1978

김용덕, 한국 제도사연구, 일조각

김혁제(교열), 원본집주 小學上下, 명문당, 1973

나종일(역), 봉건제란 무엇인가? 탐구신서 125, 서울, 탐구당, 1981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 연구소, 여씨향약언해, 동양학총서, 제 5 집, 1976

麻生武龜, 李朝時代 賑濟制度, 조선경제협회, 金融と經濟, 서울, 1919

박종홍, 한국의 사상적 방향, 박영사, 1982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대출판부, 198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한국사상대제 II, 사회경제사상편, 서울, 1976

유승국, 유학의 근본사상과 현대(東洋哲學論叢)

- 유홍렬, 한국사상사 논교, 서울, 일조각, 1980
-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1984
-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일조각, 1984
- 이수건, 영남 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민족문화총서 2, 영남대, 출판부, 1984
- 이은상, 이병도, 한국의 유학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1983
- 이준호, 울곡의 사상, 현암신서, 1975
- 임철규(역),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자, 묵자, 상앙, 장자의 사상연구, 서울, 현상과 인식사, 1983
- 田花爲雄, 朝鮮郷約教化史の研究(歴史編, 東京, 鳴鳳社, 1972)
- 田川孝三, 郷案について, 山本博士 還磨記念 東洋史論 山川出版社, 1972
- 田川孝三, 郷憲と憲目, 鈴木俊先生 古稀記念 東洋史論叢, 山東出版社, 1975
-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3
- 조남국(편역), 울곡의 사회사상, 양명각, 1983
- 조선사 연구회편, 새로운 한국사 입문, 돌베개, 1983
- 진단학회, 한국사 근대후기편, 서울, 을유문화사, 1980
- 최영희, 임진왜란 중의 사회변동, 한국연구원, 1975
- 최일섭, 지역사회 조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1983

*** 註 ***

- 1) 본 연구는 한림대학의 1984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회 1985년도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힘.
- 2) 본고 후미의 “연구논문 및 단행본” 목록 참고.
- 3) 그 예로서 고승제, 향약도입의 역사적 배경 ; 정진영, 조선 후기 향약의 일고찰 — 부인동 동약을 중심으로 — ; 김인걸, 18,9세기 신분제 동요와 향촌 지배층의 동향 — 충청도 복천현사례 — 등을 들 수 있다.
- 4) 구자현,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홍익재, 1984, pp. 154-168 참조.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 5) 최일섭, 지역사회 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1985, pp. 83-85 참조.
- 6) 사회법정에 관한 법률 제 2 조, 사회보장의 정의참조
- 7) NA, Byong-Kyun, Rappports entre Se'curite' Sociale et Aide Sociale en droit positif frangais, these de doctorat, Univ. de Paris 1, 1983, p. 5
- 8) 조세, 군역, 부역 토지 소유상의 특권
- 9) 최재현, 한국 前資本主義 生産-樣式의 개념규정문제, 서울대 사회학 연구회편, 한국 사회의 전통과 변화 (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문), 서울, 법문사, 1983, p. 27.
- 10) 진흥 기관으로서 건국초기부터 존재해오던 의창은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성종조에 폐지되게 된다.
- 11) 善惡籍은 四大綱目中, 上記한 德業相勸과 過失相規의 실천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이는 다시 말해서 約員中德行을 한 사람과 非行을 저지른 사람을 각각 기록하여 후에 賞을 주거나 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록부이다.
- 12) 車勇杰, 향약의 성립과 시행과정,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8, p. 199 참조
- 13) 유홍열, 조선에 있어서의 향약의 성립, 한국 사회 사상사논고, 서울, 일조각, 1982
이태진, 조선 전기의 향촌 질서-성리학적 질서의 확립을 중심으로-서울대 인문대학 동아시아문화 연구소, 동아시아문화 제 13집, 1976, 12 pp. 151-169.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부립운동, 진단학보, 34, 35, 참조.
- 14) 鄭享愚, 조선 향약의 구성과 조직-주자향약과 퇴계, 을곡 향약을 대비하여, 한국사논총-이홍식 박사 회갑기념-서울, 1969. 10.
- 15) 고승제, 향약도입의 역사적배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8, 조선 전기 서원과 향약, 서울, 1983, p. 186.
- 16) 본 논문의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③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사회질서의 유지, p. 11 참조.
- 17) 최재석, 동족부락, 국사편찬위, 한국사13, 조선 양반사회의 변화, p. 537.
- 18) 고승제, 한국 촌락 사회사, 서울, 일지사, 1983, pp. 254~266 참조 최재석, 동족부락, 국사편찬위, 한국사13, pp. 522~557 특히 후자의 경우, 동족부락의 발생을 17세기 또는 그 후반으로 잡고 있다.
- 19) 고승제, Ibid., p. 264.
- 20) 고승제, Ibid., p. 264.
- 21) Ibid., p. 264.

- 22) 향안과 향약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본문 p. 28 참조.
- 23) 성주탁, 회덕향약고, 백제연구 제 9 집, pp. 87 ~ 109.
- 24) 金龍德, 鄉約과 鄉規,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8, p. 222.
- 25) 다시 말해서 향약의 주체는 당시 향촌사회 지식인층인 양반사대부 계층이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향약이 主導되어 나아갔다.
- 26) 율곡집, pp. 395~422 잡저편 p. 397에서 인용.
- 27) 여기서 司貨라 함은 향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를 거두고 저장하는 일을 맡아하는 직책이다. 해주향약에는 1년씩 교대로 사화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다. Ibid., p. 395.
- 28) 이는 율곡의 사창제 약속에도 나타나 있다. 즉 同約人은 매년 10월 糙米 1斗로 下人은 5升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형우, 조선 향약의 실시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한 일고찰, 연대 人文學報 23 (1970. 6), p. 120 참조.
- 29) 7가지는 水火, 도적, 死喪, 질병, 孤弱, 誣枉, 貧乞을 말함, pp. ④-6 ~ ④-9